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 매수청구보상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의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 부지 중 지목이 대(垡)인 토지 등을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보상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장기미원 해소

예산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2014최종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	(B-A)*100/A
7,672	1,574	△ 6,098	△ 79%

사업 설명

사업목적

- 사업취지 :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47조에 의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 부지 중 지목이 대(垡)인 토지 등을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보상함.
- ※ 매수청구 :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(垡)인 토지 및 부속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시장·군수 또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
- 필요성 :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47조에 따라 2004년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부지 내의 지목이 대(垡)인 토지 등에 대한 매수청구분을 보상중임.
- 기대효과 : 공원부지 내 지목이 대(垡)인 토지 등을 보상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장기미원해소 및 공원·녹지 확충을 위한 부지 및 공간 확보

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 -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 :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
 - 매수기한 :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
 - 매수불가 시 개발허용 :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건축행위 가능(3층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공작물)
- ※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

사업 내용

- 위 치 : 서울시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
- 규 모 : 832,000㎡
- 사업기간 : 2004. 1 ~ 2020. 6
- 사업내용 :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청구보상
- 총사업비 : 353,397백만원

2015년도 사업계획

- 위 치 : 성북구 정릉동 일대 등 7필지
- 사업규모 : 1,208.2㎡
- 사업내용 : 매수청구 보상 1,208.2㎡
- 소요예산(안) : 1,574백만원

추진경위

- 2013.07.30 ~ 2014.05.28 : 도시계획시설(공원)매수청구 보상 신청서 접수(6건 7필지)
- 2014.01.23 : 1차분 매수결정(2013.07.01 ~ 2013.12.31 기간 접수분) 푸른도시국장 방침
- 2014.07.25 : 2차분 매수결정(2014.01.01 ~ 2014.06.30 기간 접수분) 푸른도시국장 방침

2015년도 예산

구 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
계	4,856	7,672	1,574	△ 6,098
시설비	4,856	7,672	1,574	△ 6,098

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

- 2015년도 보상사업비 : 1,574백만원
 - 2015년 보상사업비 : 1,574백만원
 - 토지보상비 : 1,554백만원(1,208.2㎡)
 - 건물보상비 : 5백만원(50.71㎡)
 - 감정평가비, 측량비, 등기비 : 15백만원

사업추진 절차

- 집행절차
 - 매수청구서 접수 → 검토·조사 → 매수결정 → 예산편성 → 측량 및 감정평가

○ 계약체결

- 매매계약서 작성(토지, 건물, 정착물)
- 소유권이전등기(매도자 → 서울시)
- 취득보고(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) 및 위임관리관 지정

□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○ 추진방향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 중 지목이 대(垆)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(건축)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공원·녹지의 보존·확충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조속히 보상

○ 추진일정(단위 : 백만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	추진세부내용
		집행일자	집행액	
계			1,574	
◦ 매수결정 및 통지	'14. 2 ~ '14. 7			
◦ 예산편성	'14. 9 ~ '14. 12	'14. 9 ~ '14. 12		- 예산편성
◦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	'15. 1 ~ '15. 5	'15. 1 ~ '15. 5	15	- 평가 및 측량
◦ 보상협의 및 토지보상	'15. 3 ~ '15. 12	'15. 3 ~ '15. 12	1,559	- 보상사업비 지급

실·국	부서명	담당자			
푸른도시국	공원조성과	공원행정팀장	유한수 (2133-2052)	주무관	이상용 (2133-2056)